



| | | | |
|--|-------|--|--------------|
| 문의 | 특허심판원 | 과장 임영희 | 042-481-5879 |
| | 심판정책과 | 사무관 최영희 | 042-481-8444 |
| 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| | 2019년 7월 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7월 7일(일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 | |

특허심판원, 7월 9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

- 대리인 없는 사회·경제적 약자 지원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저소득층, 장애인, 청년창업자 등의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7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- 지원대상은 저소득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소기업, 청년창업자 등이며,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(www.kipo.go.kr/ipt)를 참조하면 된다.
 -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심판 당사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특허심판원에 신청*하면 된다.
 - * 특허로(www.patent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
 -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,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.
- 특허심판원은 각 전문분야별 국선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하고,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인력풀의 변리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.

- 또한,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납부한 심판수수료(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)도 심판 종료 후 반환할 예정이다.

-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“사회·경제적 약자도 혁신 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.”고 말했다.

※ 붙임 : 「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」개요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최영희(☎ 042-481-84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. 추진 배경

- 저소득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소기업, 청년창업자 등의 사회·경제적 약자는 고비용이 수반되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
 - * 최근 5년('14-'18년) 사회·경제적 약자의 대리인 없는 심판사건 수 : 연평균 388건
- 타 행정심판 기관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 중
 - * 조세심판원, 해양안전심판원,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

2. 시행 방안

- 지원대상
 - 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장애인, 초등·중학교의 재학생,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, 소기업, 대기업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인 중기업, 청년창업자 등
-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시기
 - 청구인 :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
 - 피청구인 : 답변서 제출 기일의 만료일
- 신청방법
 -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(증명서류는 다음 페이지 참조)
 - * 특허로(www.patent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
- 심판수수료 감면
 -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 반환

<증명서류>

| 신청인 | 신청인 제출서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|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증명서류 |
|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예시) - 국가유공자증(및 가족관계증명서) 또는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 - 5·18 민주유공자증(및 가족관계증명서), 국가유공자증(및 가족관계증명서) 또는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 -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 후유의증을 증명하는 서류, 고엽제후유환자증(및 가족관계증명서) |
| 5·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| |
|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| |
|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| |
|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| |
| 참전유공자 본인 | |
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| ·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|
| 학생(초·중·고 재학생만 해당함) | · 재학증명서 |
|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| · 없음 |
|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, 사회복무요원, 전환복무수행자 | · 복무증명서 |
| 소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2.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)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·평균매출액 확인서류 (예) 재무제표 등 ※ 단,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|
|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| |
| 청년창업자(39세 이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년창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.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만 해당함) 2.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)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·평균매출액 확인서류 (예) 재무제표 등 |